



노동 3권 쟁취! 지방교육재정확충! 공무원증원!

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
K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Union

조합 소식

www.kweu.kr

• 발행일 18.10.05 • 발행호 18-22호 • 발행인 최승덕 • 주소 원주시 복원로 2312 • Tel 734-6344 • Fax 815-5510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안 의견조회 참여!

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(위원장 최승덕, 이하 강교노)은 행정안전부의 금번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」에 대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할 바임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력히 전하는 바이다.

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의견조회 중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은 지난 2018년 7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는 이미 개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형평성의 논란을 가져왔었다.

이러한 불평등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이원적인 구조로 내재된 것으로, 가장 일선에서 민원을 대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 및 시·교육청 소속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게는 이중고가 되고 있다. 해마다 새롭게 늘어나는 정부의 다양한 시책사업에 따른 일선 학교의 인력부족과 근무조건 퇴보로 인한 사기저하와 더불어 국가공무원과의 처우차별은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.

이에 강교노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반드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(안)을 관철시킬 것이다.

〈주요 개정내용〉

1.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: 3일-〉 11일
 2. 연가일수 산정방법 연월일수로 명확하게 규정
 3. 연가일수공제 제도 개선
 4. 연가 당겨쓰기 도입
 5. 임신 전 기간으로 모성보호시간 확대
 6. 만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2시간으로 육아시간 확대
-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49405?cptOfiOrgCd=1741000&isOgYn=Y>)

※ 조회기간 : 2018.9.14.~2018.10.24. (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센터)

#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의 선택 #노동조합 가입 #FAX 815-5510 송부